

VOL. 33

2016년 9월 8일



월간 이민정보

“풍부한 경험, 최고의 결과!”

케빈장 이민서비스그룹
Kevin Jang Legal Services



(케빈장 이민서비스 주소, 연락처 자동입력 스캔)

♠ 영주권자 불법가족 재입국금지 사전 면제신청 (I-601A Waiver) 시행

연방이민국 (USCIS)은 지난 8월 29일부터 영주권자 불법체류 가족에게도 해외 영사관에서의 이민비자 인터뷰 전에 미국내에서 재입국금지에 대한 사전면제 (Provisional Waiver)를 신청하는 이민국양식 I-601A를 접수받기 시작했다.

불법체류자 가족 재입국금지 사전면제 신청은 지난 2013년 3월 4일부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한해 혜택을 주던 제도로 지난 2014년 11월 20일 오바마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Executive Actions on Immigration)에 따라 영주권자의 가족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이번 사전면제신청 시행에 따른 자격요건 및 해당 가족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시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2. 합법입국 또는 밀입국후 180일 이상 불법체류하고 있으며,
3.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성인자녀이거나, (기존엔 배우자, 부모, 21세미만 미성년 미혼자녀 해당,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
4.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성인자녀로서,
5. 가족이민 (I-130), 취업이민 (I-140), 종교이민을 포함한 특별이민 (학대받는 배우자 등) (I-360) 청원서가 승인되고,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National Visa Center)에 비자수수료를 지불하여 케이스가 수속 진행중이며,
6. 영주권 수혜자인 본인 (배우자 또는 성인자녀)이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지 않으면 시민권자/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 (I-485 Adjust Status)를 할 수는 없지만 이민페티션 (I-130, I-140, I-360) 승인후 국립비자센터 (NVC)에서 이민비자 수속중 미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이민국에 재입국금지 사전면제신청을 승인받은 뒤에 영사관 인터뷰에 참석함으로써 재입국이 확실히 보장됨.

취업이민 1단계 노동청허가 (Foreign Labor Certification)-2

<지난호에 이어>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근의 영주권 문호 (Cut-Off Date)의 급진전은 취업이민 3순위 (EB-3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부문에는 다분히 희망적인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과거 한때는 6-7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3순위 취업이민 수속이 최근의 진전속도로 볼 때 약 1년 6개월 안팎이면 영주권 신청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2순위 문호의 경우는 2년6개월여 후퇴했지만 이번 10월에 다시 접수가능일자, 승인가능일자 모두 전면 오픈됐다.

이민문호의 급진전에 따른 취업이민 3순위의 수속이 빨라지는 상황에 발맞춰 제대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1단계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수속에서 시간낭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인광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꼼꼼하게 설계된 플랜에 따라 정확하고 확실하게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성공의 첫번째 요건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노동청이 임의적으로 채택하는 Audit 확률이 80-90%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Audit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해 케이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들면, 이미 PERM Regulation에서 Audit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특정 외국어를 요구한다든가, 이미 고용된 이민신청인 대상에게만 짜맞춰진 (Tailored) 자격을 요구한다든가, 또는 흔히 Audit의 표적이 되고있는 손쉬운 광고방법을 가급적 적절하게 피하는 방법으로 케이스를 진행해야 한다.

케이스를 성공의 길로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경험, 그리고 법률과 현장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한가지 더하자면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삼아 터득된 진행자의 현실대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이민신청인들에게 있어 시간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

2016년 10월 접수가능 우선일자 (괄호 안은 승인가능 우선일자)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	대상신청자	
가 족 이 민	1	2011.01.01 (2009.09.22)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인미혼자녀	
	2A	2015.11.22 (2014.12.22)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미만 미혼자녀	
	2B	2011.02.08 (2010.03.15)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3	2005.08.22 (2004.12.22)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	2004.07.15 (2003.11.01)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취 업 이 민	1	오픈 (오픈)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2	오픈 (오픈)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5년 경력소유자, 특기자	
	3	오픈 (2016.06.01)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또는 2년 이상 경력의 비전문 숙련직	
		오픈 (2016.06.01)	학위불문, 비전문직 비숙련직	
	4	오픈 (오픈)	안수받은 목사	종교계 종사자
		오픈 (승인보류)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	
	5	오픈	100만 달러 이상 투자자	투자이민
		오픈 (승인보류)	50만 달러 이상 투자 유치지역 투자자	

*위 Data는 국무부 Visa Bulletin에 근거하였음.

***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이민국이 허용할 경우에만 I-485 접수에 적용가능**

◎ 표 읽는 법

이민신청자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는 가족이민에선 이민청원서(Petition) 접수날짜, 취업이민에선 노동청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접수날짜이다. 영주권문호란 국무부가 비자발급제한(Quota)에 따라 한 달 동안의 비자발급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우선일자 순서대로 비자가 발급된다. 즉 이번 달에 발표된 접수가능 날짜 (Dates for Filing Visa Application) 보다 빠른 우선일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하거나 국무부 국립비자센터 (NVC)에서 이민비자 수속 (DS)을 진행할 수 있으며, 승인가능 날짜 (Application Final Action Dates) 보다 빠른 우선일자는 비자발급이 가능해지므로 영주권 승인 등 결론이 가능해지며 재외공관에서의 이민비자 (DS)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자가 된다.

이민국·노동청의 서류심사 수속시간

Processing Time of USCIS & DOL 2016년 8월 11일 현재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 (WAC)

I-129 소액투자 조약무역(E) 취업(H-1B)	2개월
I-129F 약혼자(K-1) 시민권자배우자 (K-3)	5개월
I-130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미혼 자녀	5개월
I-130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 미혼 자녀	5개월
I-130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인 미혼 자녀	11/16/2015
I-130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인 미혼 자녀	05/12/2015
I-130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04/25/2012
I-130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05/17/2011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 (LIN)

I-130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 미혼 자녀	5개월
I-140 세계적인 특기자, 2순위	11/2/2015, 4개월
I-485 취업영주권	01/2/2016
I-765 취업허가증 (I-485와 함께 접수)	3개월

텍사스 서비스센터 (SRC)

I-129F 약혼자(K-1) 시민권자배우자 (K-3)	5개월
I-140 세계적특기자, 석학 연구자, 국제기업 간부	4 개월
I-140 2순위, 3순위	4개월
I-485 취업영주권	11/25/2015

버몬트 서비스센터 (EAC)

I-129 단기취업(H-1B)	04/11/2016
I-129F 약혼자(K-1)	01/28/2016
I-130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미혼 자녀	01/28/2016
I-130 시민권자 성인 미혼/기혼 자녀	09/03/2012
I-130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09/03/2012
I-130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11/07/2011
I-751 조건부영주권 해제	08/31/2015

National Benefit Center (MSC)

I-765 취업허가증 (I-485와 함께 접수)	3개월
I-90 영주권카드 갱신 (10년), 재발급	01/01/2016

2016년 9월 1일 현재

PWD	PERM	Audit Review	Appeal (BALCA)
May. 2016	Jun. 2016	Jan. 2016	Jul. 2016

*위 Data는 USCIS와 DOL ETA 통계자료에 근거하였음.

영주권·시민권

취업이민·가족이민·비이민비자

- ▶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및 가능성 검토**
- ▶ 가족이민 초청, 영주권신청
- ▶ **시민권자 배우자 결혼영주권 신청**
- ▶ 청소년추방유예 신규신청, 연장신청
- ▶ 추방유예 (DACA, DAPA) 준비서류 무료제공
- ▶ 취업허가증 영주권 갱신, 여행허가서, 시민권신청
- ▶ 국립비자센터(NVC) 취업이민·가족이민 비자수속
- ▶ H-1B, E-2, R-1, K-1, B-1/2 신분변경 연장수속
- ▶ 불체자사면, 청소년추방유예, 포괄 이민개혁 준비
- ▶ 기타 모든 이민국서류 수속대행, 이민서류 번역

“의뢰인은 가족입니다.”

케빈장 이민서비스그룹 Kevin Jang Legal Services

3660 Wilshire Blvd. Suite 640, Los Angeles, CA 90010

(Wilshire+Hobart 한미은행 건물)

(문의환영) 213-381-1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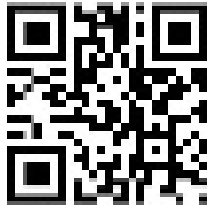
Fax 213-608-1893

eMail: info@imincenter.com



카톡상담 writer1003

www.imincenter.com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웹사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정부공인법무사 LDA (Lic. 2013203084)
주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57BSBGU1796)